

▶▶ 상원 법안 43(SB 43) 및 LPS 후견인제도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LPS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Lanterman-Petris-Short (LPS) Act 후견인제도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거나 자발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절차를 거쳐 **후견인(conservator)**이 지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 정신과 입원 및 치료 승인/허가
- 의료진 및 정신 건강 전문가와 협력
- 회복과 웰빙을 위한 지원 서비스 조정

LPS는 또한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involuntary psychiatric holds)'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 '5150'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5585'로 불립니다.

상원 법안 43(SB 43)으로 인해 LPS 후견인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SB 43 은 2023 년 10 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제정되었으며, 약 50 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의 LPS 후견인제도를 개정했습니다.

2024 년 1 월 1 일부터 SB 43 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중증 장애(grave disability)'의 정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확대합니다.

1.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도 비자발적 입원의 사유로 포함됩니다.
2. 정신질환 또는 물질 사용 장애로 인해 개인의 안전 또는 필요한 의료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해집니다.

‘중증 장애(grave disability)’의 정의:

- 2024년 1월 1일 이전 정의:
 -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해 음식, 의복,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 SB 43에 따른 새로운 정의:
 - *정신 건강 장애,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 또는 이 두 가지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로 인해,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또는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참고: 새로운 정의는 성인에게만 적용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SB 43 의 주요 변경사항이 202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B 43 시행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5150/5585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중증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후견인제도와 5150/5585 절차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결정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해당 개인의 동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개입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LPS 후견인제도에 관한 추가 정보

-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선택한 사람이거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 LA 카운티는 가능한 한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에서 개인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Full Service Partnership\(FSP\)](#),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AOT\)](#) 또는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CARE Act\)](#)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 자발적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결 하도록 노력합니다.
- LPS 후견인제도에 대한 의뢰는 지정된 병원/시설의 의료 전문가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 Homeless Outreach Mobile Engagement (HOME) 팀에서 접수합니다.
- 카운티 후견인제도 조사관인 The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OPG)이 의뢰를 받습니다.
- OPG가 제출된 의뢰서의 기준이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임시 후견인을 청원하고 장기 후견인이 필요한지 또는 후견인제도의 적합한 대안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은?

SB 43, LACDMH OPG, CARE 프로그램 및 AOT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LACDMH 웹사이트 dmh.lacount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SB 43 실행위원회

SB43의 효과적인 협력과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LA 카운티는 정신건강국(DMH), 공중보건국(DPH),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SB 43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SB 43에 대한 문의나 교육을 요청하시려면 SB43@dmh.la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Substance use disorder(SUD)는 미국 내 12세 이상 인구 중 4,8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을 만큼 개인과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UD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ublic Health Bureau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웹사이트 ph.lacounty.gov/sap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 및 리소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LA 카운티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상담 헬프라인 1-800-854-7771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연중무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AOT-LA: 보조 외래 치료) - dmh.lacounty.gov/our-services/countywide-services/aotla/
-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CARE: 케어 법원 프로그램) - dmh.lacounty.gov/court-programs/care-court/
-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OPG: 공공 후견인 오피스) - dmh.lacounty.gov/our-services/public-guardia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 – 약물 사용 예방 및 통제:

- RecoverLA.org. 모바일용 약물 리소스 가이드.
- 치료 기관 및 병상 검색(SBAT).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제공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UDHelpLA.org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SB 43 관련 용어 설명 및 가능한 지표와 증상 목록을 보려면 LACDMH 웹사이트 dmh.lacounty.gov/sb43을 방문하시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